

【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의년월일 : 1997. 11. 25.

제 의 자 : 의 장

□ 주 문

- 1998년도 예산안 및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등 예산·결산관련 안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것을 결의 함.

□ 주요골자

- 양주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관련 안전심사를 위하여 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결특위 위원을 李興圭, 李商源, 禹忠國, 朴榮遠, 柳在元, 金光培, 金榮安의원으로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 5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출년월일 : 1997. 11. 1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오래전 하천의 지형이 바뀌면서 은현면 봉암리와 동일한 부락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봉암리 지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 조정 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내무부령 제547호, 1991. 12. 9)

- 제3조(경계변경의 승인기준) :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의 변경을 승인한다.

1. 도로·하천·아파트단지조성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경우
3.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
4. 교통·학군·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당해 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의회의견 청구 근거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내무부령 제547호, 1991. 12. 9)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요골자

○ 남면 한산2리 1-1번지의외 134필지 115,884㎡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

- 도 로 : 15필지 2,538㎡
- 대 지 : 11필지 3,983㎡
- 잡 종 지 : 52필지 57,684㎡
- 공장용지 : 20필지 15,585㎡
- 전 : 22필지 30,161㎡
- 답 : 1필지 289㎡
- 구 거 : 1필지 140㎡
- 하 천 : 11필지 3,845㎡
- 임 야 : 1필지 1,580㎡
- 묘 지 : 1필지 79㎡

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의하여 하천의 중앙을 지적분할 하여 면간 경계선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부 필지 및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변경된 지적을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

※ 주민의견조사 결과

- 조사기간 : '96. 1. 20 - 5. 16
- 조사방법 : 각 가구별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
- 조사대상 : 56가구(회시 38, 미회시 9, 반송 9)
- 조사결과 : 찬성 32(84.2%), 반대 4, 무효 2

□ 편입대상지역 도면 : “별 첨”

□ 향후 조치사항

-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의하여 하천 중앙선으로 지적분할
- 행정구역 변경(편입)지역에 대한 가지번 부여 및 지적정리
- 행정구역변경 승인요청(경기도)
-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
- 각종 공부 정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기타 공부)

양주군의회의견서

경계조정대상지역

양주군 남면 한산2리 7반
(1-1번지와 134필지)

⇒ 은현면 봉암리

< 의 견 >

조정 여부

- 찬 성, 반 대

조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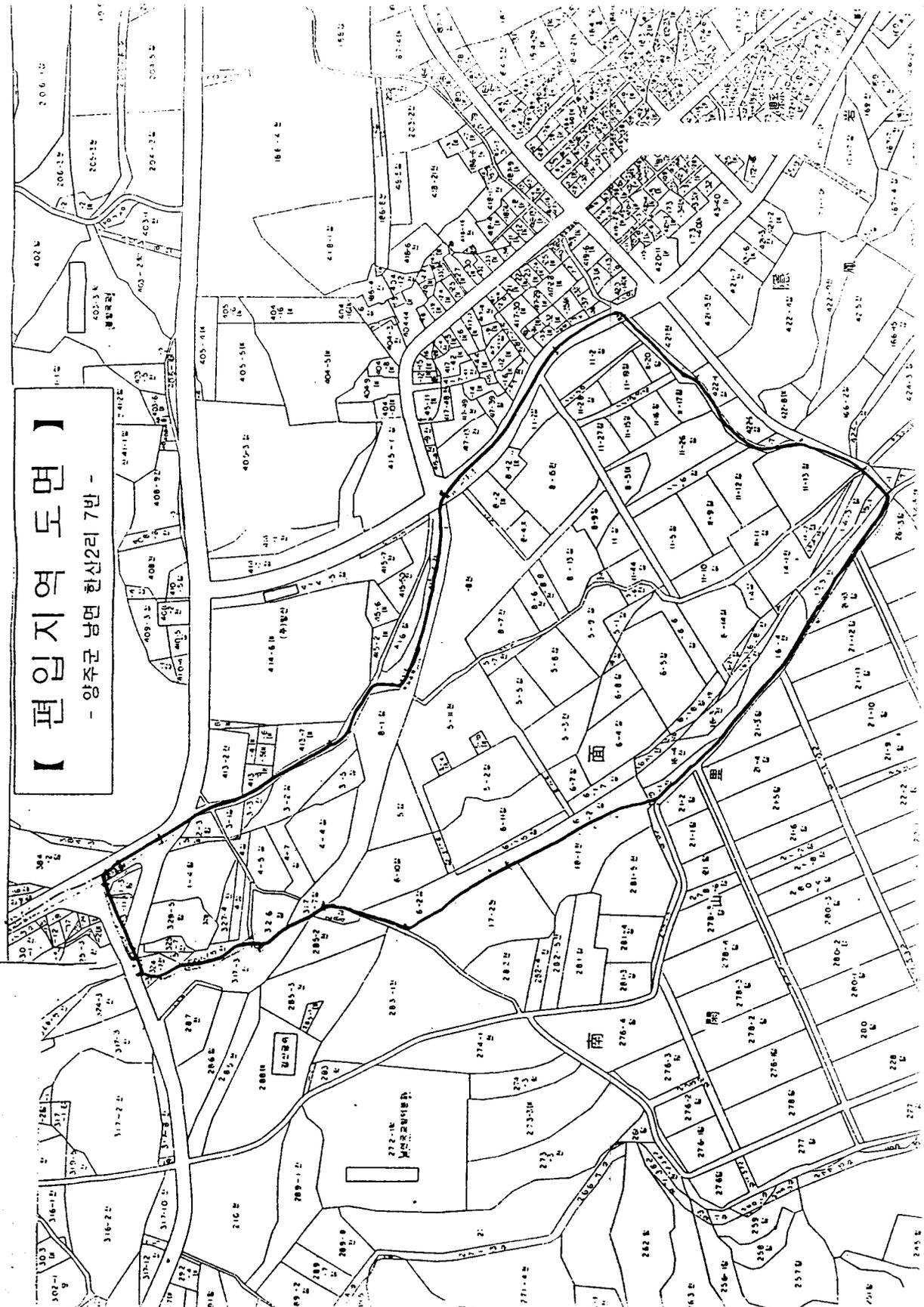
○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추가 의견

1997. . . .

양주군의회의장 인

【 편입지역 도면 】
- 양주군 남면 한신2리 7반 -



행정구역조정 주민의견

(남면 한산2리 7반 ⇒ 은현면 봉암리)

구 분	주 민 의 견	비 고
편입되는 지역주민 (한산2리 7반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등 마을단위 행사 공동개최 ○ 봉암지역의 상수도 공동사용 ○ 봉암지역과 동일상권이 형성되었고 봉암지역의 농협,우체국등 편의시설을 이용 ○ 봉암지역의 소방대,방범대의 수혜를 받고 있음 ○ 봉암지역 학군을 선호하여 주민등록지를 봉암리로 신고하고 있음 	편입찬성
한산2리 지역주민 (기존지역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생활권은 봉암지역이나 한산리 잔여부락과 편입되는 지역의 중간지점에 연립주택,상가등이 신축되고 있어 향후 동일생활권으로 유지될 것임 ○ 상기지역은 봉암지역 생활권이나 10여개 기업은 공장용수의 수원이 한산지역에 있는 등 봉암지역 만을 생활권으로 볼수 없음 	편입반대
편입받는 지역주민 (봉암리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면 한산2리 7반은 주민들의 모든 생활권이 봉암리에 두고 있으므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입되어야 할것임 	편입찬성
편입되는 면지역주민 (남면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이 있는 다른면으로 편입을 요구 하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나 ○ 상가 및 기업체 밀집지역이 타지역으로 편입 되면 남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될것임 	
편입받는 면지역주민 (은현면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면 한산2리 7반은 수십년간 봉암리에 생활권을 두고 있으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봉암리로 편입을 환영하고 있음 	

행정구역조정 주민의견

(은현면 봉암리 4반 ⇒ 남면 황방 1리)

구 분	주 민 의 견	비 고
편입되는 지역주민 (봉암리 4반 주민)	○ 남면 황방리와 인접해 있어 마을 경조사에는 동참하고 있으나, 조상 대대로 봉암리 마산 부락에 뿌리를 내리고 학연,지연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한산2리로의 편입을 반대	편입반대
봉암리 지역주민 (기존지역 주민)	○ 초등학교 학군이 봉암초등학교 학군임 ○ 지연,마을간 협동심 등으로 인하여 편입을 반대	편입반대
편입받는 지역주민 (황방 1리 주민)	○ 경조사등 마을단위 행사의 공동개최 및 친목회의 단일구성 등 동일 생활권임	편입찬성
편입되는 면지역주민 (은현면 지역주민)	○ 오래전부터 봉암리 4반 마산부락과 학연,지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은현면민으로서 경조사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남면으로 편입을 반대함	
편입받는 면지역주민 (남 면 지역주민)	○ 생활권이 있는 다른면으로 편입을 요구하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할것임	
은현면장 종합의견	○ 은현면 봉암리 4반 주민들은 수십년간 봉암리 주민들과 생활을 같이하여 지역적 단결심 및 지연·학군 등으로 황방리로의 편입은 불합리하며 ○ 남면 한산2리 7반은 지형적으로나 생활권이 봉암리 지역과 같으므로 봉암리로 편입됨임 타당하다고 판단됨	
남면장 종합의견	○ 한산2리 7반지역은 생활권을 알수 있는 경조사 및 친목단체 운영등이 은현면 봉암리 지역과 통합운영되고 ○ 봉암리 4반지역은 경조사 및 친목단체 운영이 황방1리 지역과 통합 운영되고 있는 등 ○ 양지역은 편입 받고자하는 지역과 동일 생활 권을 이루고 있어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피하나 남면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현 행정구역체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음.	

第2章 地方自治

第1節 通則

●地方自治法(1988.4.6) 法律第4004號全文改正

- 改正 1989.12.30 法律第4162號
- 1990.12.31 法律第4310號
- 1991.5.23 法律第4367號
- 1991.12.31 法律第4464號
- 1994.3.16 法律第4741號
- 1994.12.20 法律第4789號
- 1995.1.5 法律第4877號
- 1995.8.4 法律第4959號
- 1995.12.29 法律第5069號(教育法)

第1章 總綱

第1節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關係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며 地方의 均衡적 發展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發展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89.12.30)

第2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4.12.20>

1.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
2. 市와 郡 및 區

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인 區에 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의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안에 둔다. <改正 94.12.20>

③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改正 94.12.20>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94·12·20>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증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증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④포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증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브를 2개이상의 洞·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브를 하나의 洞·브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브(“行政洞·브”라 한다)를 따르 들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5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管轄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改正 94·12·20>

第6條 (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증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

11 - 2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1991. 12. 9 내무부령제547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4 조제 3 항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폐치·분합,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한다)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및 설정,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7 조제 1 항제 3 호의 시설치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의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변경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명칭변경을 승인한다.

1.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 3 조(경계변경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승인한다.

1. 도로·하천·아파트단지조성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대규모국토개발·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경우
3.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
4. 교통·학군·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 4 조(시가지 구성지역의 범위) 영 제 7 조제 1 항제 2 호 및 등조제 2 항제 2 호에서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3차산업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제 5 조(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 7 조제 1 항제 2 호 및 등조제 2 항제 2 호에서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라 함은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 1차산업외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 1차 산업과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공업·기타 도시적 산업에 주되게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 6 조(시설치의 기준) 영 제 7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이하인 시의 평균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8만을 전국시의 평균면적(제공킬로미터)으로 나눈 수치보다 상회할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의 거주인구 및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경향에 있을 것.

제 7 조(자치구가 아닌구 및 면·동의 설치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 및 동의 설치를 승인한다.

1. 구 :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 : 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각급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독립적으로 면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 대규모지역 개발사업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내무부장관은 주민편의·행정능률·지역의 균형 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 승인한다.

제 9 조(행정구역의 조정대상 조사)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신청의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구역의 조정을 승인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승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서와 조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변경의 승인신청 : 별지 제 1 호서식
2.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승인신청 : 별지 제 2 호서식

3.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신청 : 별지 제 3 호서식

4. 읍·면·동 설치의 승인신청 : 별지 제 4 호서식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승인) 내무부장관은 제 2 조·제 3 조·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기본정책방향과의 합치여부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

제13조(승인서의 서식) 내무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변경의 승인 : 별지 제 5 호서식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승인 : 별지 제 6 호서식
3.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 별지 제 7 호서식
4. 읍·면·동설치의 승인 : 별지 제 8 호서식
5. 시·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승인 : 별지 제 9 호서식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사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공부정비) 내무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주어야 한다.